

건설소음진동 피해분쟁조정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곽 광 수* 김 재 수**

A Case Study of Dispute Mediation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Kwang-Soo Kwak* Jae-Soo Kim**

ABSTRACT

Recently people have come to demand more pleasant environments as the quality and right of life have been improved. Along with industrial development, the tendency is causing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concerning environmental damages. Of many kinds of environmental damages, noise and vibration pollution rising at construction fields are particularly the most common subjects of public grievance. Thu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1991, purposing to utilize fully the promptness and expertise of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to resolve environmental damage disputes promptly and fairly by interfering in them actively. With the prompt and fair dispute mediations of the committee, people came to be able to get fair and prompt remedies for damages in their health and fortune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by analyzing dispute mediation case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we will suggest basic material on which efficient actions can be taken for public grievances happening in the future.

1. 서론

최근 삶의 질과 권리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더불어 산업발달에 의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간의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진동 공해는 환경피해중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확실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피해분쟁을 신속·공정

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91년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피해 중 건설소음진동 피해분쟁조정사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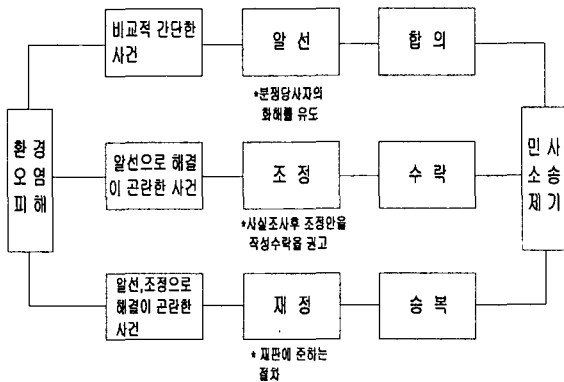
환경피해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장기간 경과에 따른 원인상황의 변경 또는 소멸 등으로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한 당시의 오염현상에 대한 재현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속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 전문

* 정회원, 원광대 건축음향연구실 박사과정

** 정회원, 원광대 건축음향연구실 부교수, 공학박사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피해소송에 있어서 가해자가 배출한 어떤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는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調整)의 종류는 알선(斡旋)⁽¹⁾·조정(調整)⁽²⁾·재정(裁整)⁽³⁾의 3종류가 있으며 그 처리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환경오염 분쟁의 처리흐름

또한 현행법상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알선·조정절차만 수행하고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알선·조정 외에 주로 재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피해범위는 사업활동이

- (1)알선: 비교적 간단한 분쟁사건으로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며 합의를 이루어 해결을 도모(3개월)
- (2)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9개월)
- (3)재정: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 취급(9개월)

나 기타 사람의 활동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발생 등의 분쟁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산정가액 수수료만으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사례중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설소음진동의 영향, 민원신청내용 및 사건처리 결과비교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피해분쟁조정사례에 대한 자료의 범위는 환경분쟁사건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던 '93년에서부터 '2000년 말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398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자진철회 및 지방이송등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사건은 본 자료의 처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등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표화 시켰다.

IV. 분석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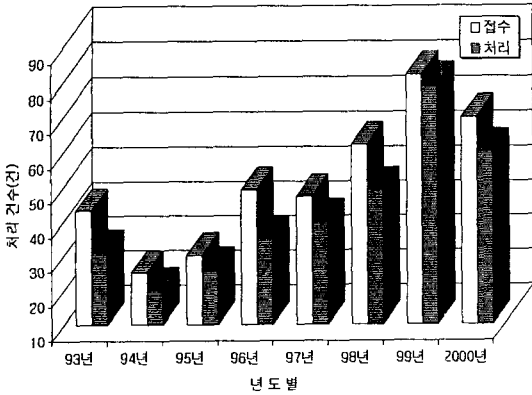
4.1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비교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초반인 '1993년부터 '2000년 말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년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표1], [그림 2]와 같다.

[표1] 년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년도별	사건현황			처리건수			자진철회	지방이송	진행중(이월)
	계	접수	이월	계	조정	재정			
'93	44	43	1	31	7	24	-	-	-
'94	28	25	3	20	2	18	-	-	-
'95	38	30	8	26	5	21	-	-	-
'96	61	49	12	35	32	3	1	-	-
'97	72	47	25	40	30	10	4	-	-
'98	90	62	28	49	35	14	4	-	-
'99	119	82	37	79	36	43	4	6	-
'2000	100	70	30	60	40	20	5	5	(30)
합계	-	398	-	340	187	153	18	11	30

[표1]에서 보면 총 398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평균 85.4%(340건)의 높은 조정처리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자진철회 20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의 이송이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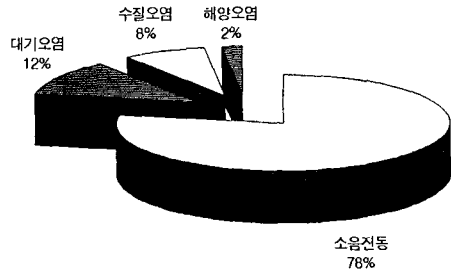


[그림 2] 년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또한 [그림 2]에서 보면 전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건수는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99년에 조정신청 접수에 대한 처리결과가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불황기의 여파 때문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률이 더욱 높아진 것을 고려한 처리결과라고 사료된다.

4.2 피해원인별 조정신청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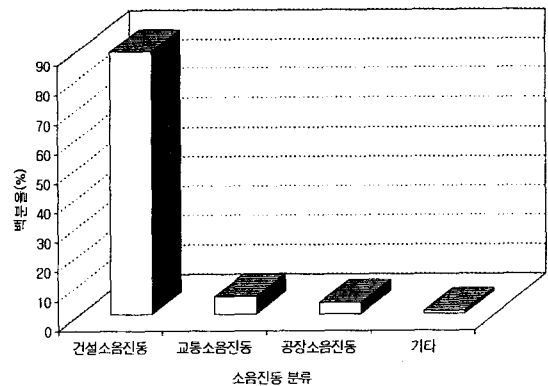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398건의 분쟁조정에 대한 피해원인별 신청현황을 파악해 보면 [표2],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피해원인별 신청현황 비교

[표2]와 [그림 3]에서 보면 소음진동분야가 312건(78%), 대기오염이 47건(12%), 수질오염이 33건(8%), 해양오염이 9건(2%)순으로 분쟁조정 신청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최근 5년동안('96~'2000년)의 피해원인별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소음진동분야의 피해원인 지적률이 84%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최근 환경오염피해중 소음진동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음진동분야를 좀더 자세히 파악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소음진동분야중 건설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

[표2] 피해원인별 조정신청 현황비교

년도별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계		398	311	78	47	12	31	8	9	2
'93		43	21	48.9	9	20.9	5	11.6	8	18.6
'94		15	10	66.7	2	13.3	3	20	-	-
'95		30	18	60	4	22.2	7	23.3	1	3.3
'96		49	40	81.6	7	14.2	2	4.2	-	-
'97		47	36	77	9	19.1	2	3.9	-	-
'98		62	56	90.3	4	6.5	2	3.2	-	-
'99		82	71	86.6	6	7.3	5	6.1	-	-
'2000		70	59	84.3	6	8.6	5	7.1	-	-

그림에서 보면 소음진동관련 분쟁조정 신청중에서 건설소음진동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소음진동, 공장소음진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93년이후 작년말까지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소음진동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진동 관련민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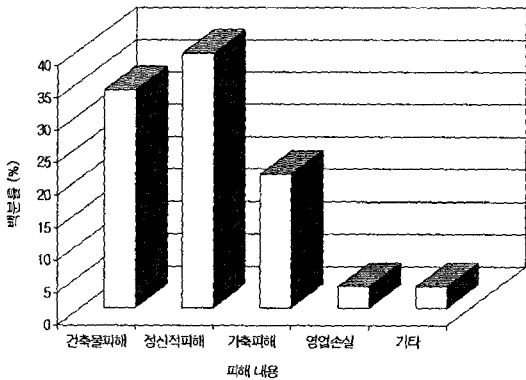
4.3 피해내용별 조정신청 현황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조정을 피해 내용별로 파악해 보면 [표3], [그림 5]와 같다.

[표3] 피해내용별 신청현황 비교

구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피해	축산물 피해	농산물 피해	수산물 피해	기타
년도별							
계	398	124	87	78	41	31	37
'93	43	2	14	5	5	15	2
'94	15	2	3	5	3	1	1
'95	30	3	8	5	5	4	5
'96	49	18	18	4	6	-	3
'97	47	24	6	7	6	1	3
'98	62	28	5	19	6	2	2
'99	82	20	25	17	5	3	12
'2000	70	27	8	16	5	5	9

[표3]에서 살펴보면 전체 환경오염 피해중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정신적 피해와 건축물 피해가 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물피해, 농산물피해, 수산물피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 조정사례를 파악해 보면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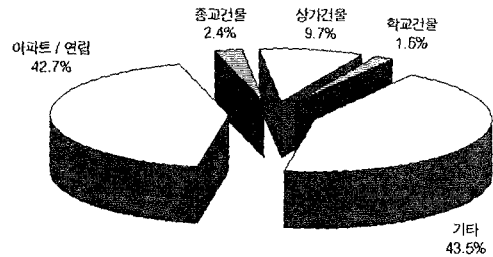
[그림 5]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내용별 현황

그림에서 보면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내용별 현황은 정신적피해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축물피해 33.6%, 가족피해⁽⁴⁾ 20.5%, 영업손실 3.3% 순으로 파악되었다.

(4) 본 연구에서 가족피해 대상범위를 축산물피해 뿐만아니라 각종 양식업 관련피해 등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관련 민원은 인근 주민의 정신적피해와 인접 건축물 관련 피해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가축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사례를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서 최근 3년동안('98~'2000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축피해 또한 정신적 피해 및 건축물 관련피해와 더불어 향후 꾸준한 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파악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민원대상 건축물공사의 종류

그림에서 보면 아파트/연립주택 공사장이 42.7%로 가장 높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가건물, 종교건물 관련공사 등의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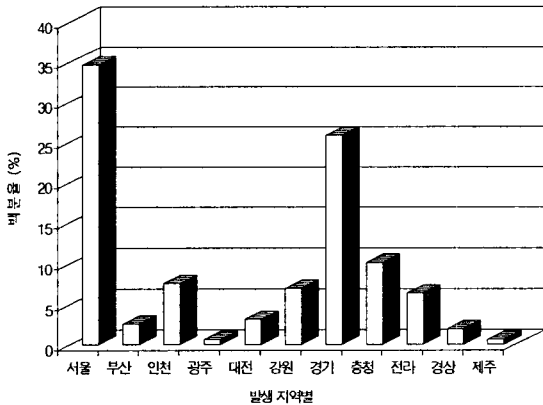
4.4 분쟁조정신청 발생지역별 현황

중앙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의 발생 지역별 현황을 파악해 보면 [표4]와 같다.

[표4] 발생지역별 신청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98	118	12	2	30	2	9	86	16	20	29	19	20	18	16	1
'93	43	12	-	-	1	-	-	6	-	4	8	3	5	-	4	-
'94	15	2	2	-	-	-	-	5	1	-	1	2	1	1	-	-
'95	30	5	-	1	5	-	2	6	4	2	1	3	1	-	-	-
'96	49	20	4	-	1	-	1	12	2	3	1	3	1	1	-	-
'97	47	15	3	-	3	-	-	13	1	2	1	2	1	2	4	-
'98	62	22	-	-	8	-	1	12	1	5	6	2	2	1	1	1
'99	82	27	1	1	9	1	2	16	1	4	8	3	2	4	3	-
'2000	70	15	2	-	3	1	3	16	6	-	3	1	7	9	4	-

[표4]에서 보면 전체 환경오염 분쟁조정 신청사 건중 서울·경기에서 51%(204건)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서 환경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별 분쟁조정 신청현황을 파악해 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발생지역별 신청현황

그림에서 보면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은 수도권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가 전체의 67.9%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민원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도 10.1%, 강원도가 6.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인구가 밀집한 서울·경기지역은 수도권지역의 특성상 많은 건설공사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공사 및 아파트공사, 도로건설, 택지조성, 골프장 건설공사등이 피해분쟁 조정사건의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동안('96~'2000년)의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 이외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등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지역에서의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률이 점차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분쟁조정신청 처리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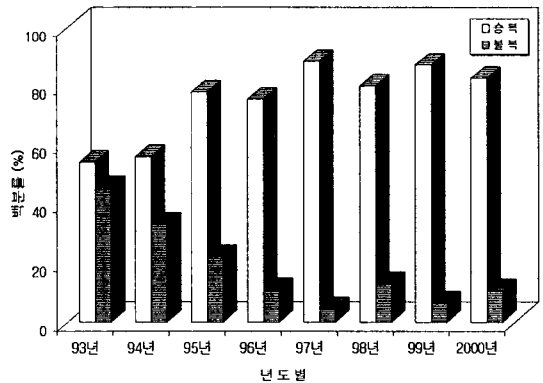
중앙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여부를 파악해 보면 [표5]와 같고, 이중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처리 결과에 대한 승복여부를 파악해 보면 [그림 8]과 같다.

[표5]에서 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체 피해

분쟁 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평균 승복률은 7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그림 8]과 같이 건설소음진동관련 조정처리 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승복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9년의 승복률은 9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 도입초기인 '93년과 비교해볼 때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만족률은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승복률 비교

구분 년도별	계	당사자 승복		당사자 불복		비고
		건수	%	건수	%	
계	333	264	79	69	21	승복여부 미정제외
'93	31	15	48	16	52	
'94	20	13	65	7	35	
'95	26	21	81	5	19	
'96	35	26	74	9	26	
'97	40	35	88	5	12	
'98	49	40	82	9	18	
'99	79	71	90	8	10	
'2000	53	46	87	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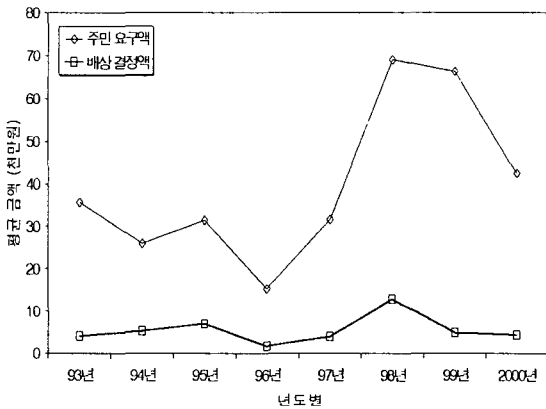


[그림 8]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승복률 비교

또한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불복률은 분쟁조정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족의 원인을 파악해 보면 민원발생시 피해자의 경우는 배상결정액수에 대한 불만 및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불만이며, 가해자의 경우는 배상결정액수

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불만과 배상책임이 가해자에게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불만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10년동안의 분쟁조정 처리결과중 건설소음진동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에 대하여 배상액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으로 지적된 주민의 피해보상 요구액과 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배상액의 차이를 파악해 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연도별 평균 피해배상액과 요구액의 비교

그림에서 보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비해 최근 4년동안('97~'2000년)의 민원발생시 피해자의 요구보상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98~'99년에 가장 많은 피해배상 요구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분쟁위원회의 피해배상액 결정은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처리 결과를 토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결정수준을 피해자인 민원인이 요구하는 피해배상액과 비교해 볼 때 평균 23% 정도의 배상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환경분쟁 조정사례 분석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결과는 평균 85.4%를 보이고 있

으며, 과거에 비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 의 피해원인은 소음진동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지적률이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피해 및 건축물피해가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가축피해 관련민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경기의 수도권지역에서 매우 높은 민원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경우 점차 지방에서의 민원발생률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소음진동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승복률은 꾸준한 증가추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불만족의 원인으로 지적된 주민의 피해보상 요구액과 분쟁위원회의 배상액 차이를 살펴보면 민원인의 보상요구액은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배상액 결정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관련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원인 양측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검토기준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재수와 5인, 『건설소음·진동』, 서우출판사, 2001.9
2.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사례집 1993~2000』
3. 국립환경연구소, 『진동배출허용기준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1983
4. 한국표준연구소, 『소음환경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1982
5. 환경부,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1997.12
6. 환경부, 『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1996.12
7.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98.2.24), 대통령령15672호
8.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99.2.18), 환경부령 67호

http://sound.wonkwang.ac.kr
bredsoo@sound.wonkwang.ac.kr